

서울특별시교육청 교직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□ 존경하는 김생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·동료 위원 여러분!  
장인홍 의원입니다.

□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

「서울특별시교육청 교직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  
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,

□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
본 조례안은

지방보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교직단체의 범위에 퇴직교원으로  
구성된 단체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이러한 교직단체의 지원  
을 통해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  
었습니다.

□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,  
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